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101581 판결 [가맹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10158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54906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준영, 장품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서정식, 이승련

변론 종결 2021. 12. 9.

판결 선고 2022. 2. 1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5490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40,210원 및 그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1,139,1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5.부터,

19,001,11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각 2022. 2.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641,320원 및 그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2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1,139,1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5.부터, 38,002,22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641,320원 및 그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1,139,1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5.부터, 38,002,22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영어학원 D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C 영어학원]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고, 이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권리 및 의무 사항과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서면통지) ① 본 계약에 의한 각종의 통지는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표기된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원고의 [C 영어학원] 가맹점의 소재지에 대하여 문서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2018. 11. 30.부터 2020. 11. 29.까지

제40조(특약사항)

① 가맹유형: S. Branch

② 가맹비 :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교육비 :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이행보증금 : 면제

⑤ 온라인사용료 6개월 지원

⑥ 온라인 사용자 50명 이상시 Sub-Branch로 변경하며 프로모션 총 금액의 차액인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입한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E는 2018.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특약사항

1. 가맹유형: S. Branch

2. 가맹비 : 500만 원

3. 교육비 : 100만 원

4. 이행보증금 : 제외

5. 온라인 사용료 6개월 지원

6. 오픈 시까지 6개월 유예

7. 계약금으로 가맹비의 50%인 250만 원 납입

8. 추후 오픈하는 학원이 Sub Branch일 경우 300만 원만 추가 납입하며 교육비는 추가되지 않음

9. 계약해지 시 계약금 100% 환불

다. 원고는 2019. 1.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영어도서관 진천직영점 직영계약(이하 '이 사건 직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권한

1)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상표사용의 권한 : 단, 가맹점 해당 권역에 한정

2) 월정 상표사용료 : 면제

3)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부가세 별도)

A. 50만 원 정액제 : 회원수 제한 없음

4) 본사 물품 구매시 원가 사용 : 가맹점 공급가의 25% 할인 적용

(단어노트, 포트폴리오 파일, 가방 등)

5) 본사 임원의 무상 경영컨설팅 지원 : 요청시 연 2회

(학원 운영체제 및 교육컨텐츠 점검과 컨설팅, 원생모집 마케팅 기획, 학부모 설명회 유치)

6) 직영점 강사 본사 객원연구원으로 선임(요청시)

강사 자부심 및 질적 향상 도모, 학부모 홍보 효과(본사 R&D 업무수행시 비용 지급)

2. 본사 업무협조 사항

1) 예비 가맹점 상담시 장소제공 : 월 2회 이하에 한정

2) 예비 가맹점주 가맹상담 지원 : 가맹성공시 가맹비 수익 분배(사례별 10%~40%)

3) 직영점 인근 지역 가맹점 개설시 강사교육 장소제공 : 월 1회 이하에 한정

○ 주식대금 : 15,000,000원

○ 직영점비 : 10,000,000원(vat별도)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5. 가맹금 2,200,000원, 2019. 2. 14. 가맹금 및 교육비

3,300,000원, 직영계약금 10,000,000원, 주식대금 15,000,000원, 2019. 2. 25. 교재·북케이스 및 라벨비용 11,139,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9. 2. 23.부터 2019. 7. 31.까지, 부동산 중개비 2,780,000원, 월세 7,480,000원, 관리비 1,642,220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 1,10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의 해제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특약으로 6개월 동안 해제권을 유보하였고, 원고는 늦어도 2019. 3. 25.경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학원)오픈 시까지 6개월 유예하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100%를 환불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해제권을 유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확장하는 형태의 가맹계약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과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유보된 해제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갑 제12, 34~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④항 기재 사실을 아래 ⑤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2019. 3. 25.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은 2019. 3. 25.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① 원고는 2019. 3. 7.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을 담당한 피고 측 E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② E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원고는 같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 내용증명우편을1) 2019. 3. 15. 피고 측 F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2019. 3. 22.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9. 3. 21. 피고의 위례 본점으로 발송하였으나 2019. 3. 29.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9. 3. 21. 피고의 수지 신봉 직영점으로 발송하였으나 2019. 3. 25.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 ③ 특히 피고의 위례 본점(피고가 이 사건에 응소하면서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이다)에 대한 발송은 원고에게 배달완료 문자가 전송되었다가 이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피고의 수지 신봉 직영점(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표기된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상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 곳이다)에 대한 발송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므로 누군가 우편물을 수령한 후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현재에도 같은 장소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④ 그 무렵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의 진행과 관련된 논의는 중단되어 이 사건 학원은 운영을 개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참조).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별지 기재와 같다)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2) 이 사건 가맹계약 시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및 제11조(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30.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2018. 11. 10.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2018. 11. 10. 피고로부터 본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측 E가 2018. 12. 30. 처음 만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전에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시 가맹계약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가맹희망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가맹사업법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할 의무 및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법률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직영계약 시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영계약 시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영계약도 가맹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영계약에 관한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직영계약 시 가맹계약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위 2. 나. 2)

다)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맹금 4,400,000원과 직영계약금 10,000,000원을 예치기관이 아닌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은 이 사건 학원이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제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60명 이상 학생 유치, 영업 지원, 직영계약의 혜택 등 피고의 약속이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 및 교육비 5,500,000원, 직영계약금 10,000,000원, 주식대금 15,000,000원, 교재·북케이스 및 라벨비용 11,139,100원 합계 41,63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동산 중개비 2,780,000원, 월세 7,480,000원, 관리비 1,642,220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 1,10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00,000원 합계 38,002,220원이다.

나)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맹희망자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의 체결에 있어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출한 가맹금 등이 전부 원상회복 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 체결의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001,110원(= 38,002,22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60,640,210원(= 원상회복 41,639,100원 + 손해배상 19,001,110원) 및 그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2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9.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 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8. 12. 5.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9. 2. 14.부터, 11,139,1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9. 2. 25.부터, 19,001,11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3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효진

판사이국현

판사김광진

별지

1)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직영계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로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